

4/ 전문가 집단의 현황을 통해 본 재일동포사회

변호사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

유혁수

韓国人研究者フォーラム
Korean Scholars' Forum in Japan Board

ホーム フォーラム紹介 フォーラム活動 研究者データベース 会員の広場 お知らせ

Korean Scholars' Forum in Japan

当フォーラムは日本に居住する韓国/朝鮮出身研究者間のネットワーク構築を通じて、相互の学術交流及び経験の回り、韓日関係の健全で数厚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会則第2条)

○ 主宰者挨拶
○ 会則
○ 組織

開催告知 11/14 国際会議開催のご案内

速報: 日本の外国人法制の現状と課題
「日本の外国人法制の現状と課題」第2・3回 韓国語版更新

活動報告 第43回定例研究会報告

同胞社会への窓
神奈川大学「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のご案内

News & Topics

お知らせ	16.01.22 New 韓国人研究者フォーラムからの「お知らせ」20160122号
お知らせ	15.12.14 韓国人研究者フォーラムからの「お知らせ」20151213号
お知らせ	15.11.09 韓国人研究者フォーラムからの「お知らせ」20151109号
会員の広場	15.11.07 神奈川大学「日韓国交正常化5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のご案内...

유혁수(柳赫秀)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국제사화과학연구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80년대 초 일본국비(문부성)장학생으로 도일.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법학박사). 전공은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관계. Harvard Law School(1995~1996)과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SAIS) of Johns Hopkins University(2003~2004)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일본국제법학회, 일본국제경제법학회(현재 상무이사·국제교류위원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원(현재 국제이사), 〈한국인연구자포럼〉(<http://ksf.jp>) 대표. 저서로 『갯트19条と国際通商法機能』, 『講義国際法』(有斐閣, 2011) 등이 있고, 논문으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일본비평』 12호, 2015),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울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일본비평』 10호, 2014)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1. 들어가며

1) 두 가지 ‘사건’의 파장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2006년 2월 25일 도쿄 전덴쓰(全電通) 홀에서 치러진 김경득 변호사의 추모집회 광경이다. 2005년 12월 28일 향년 56세로 사망한 후 거의 두 달 만에 열린 추모식에는 재일동포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인듯 홀 안은 600여 명의 추모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아직 ‘자이니치’¹ 사회와 소원한 상태이던 당시의 나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재일동포사회에서 김경득 변호사라는 인물의 입지가 말이다. 김경득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6년 전인 1970년 일본명으로 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히타치(日立) 채용이 거부된 박종석이 수년 간의 재판을 통해 자이니치에 대한 차별을 넘어 취직의 물꼬를 튼 사례가 있었지만, 재일동포사회에 던진 충격파로는 아마도 김경득 변호사의 등장에 따른 파장이 훨씬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다.

1977년 3월 23일 최고재판소에 의해 사범연수소 입소가 허용되어 2년간의 수습을 마친 김경득이 1979년 6월 외국적 변호사 제1호로서 변호사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일본변호사로서 등록된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는 2015년 4월 현재 164명에 이른다.² 불과 40년도 안 된 사이에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의 인구비례를 넘는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된 것이다. 특기할 것은 최근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신(新)사법시험에 합격한 뉴커머 변호사도 7명이나 배출되었다는 사실이다.³ 40년이란 짧은 시간에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이 재일동포의 직업 가운

1 이 글에서 ‘자이니치’(在日)는, 올드커머와 같은 의미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의 패전 후에도 일본에 남은 한국·조선인들과 그 후손을 의미하는 ‘특별영주자’들과, 특별영주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 4.3사건 때 일본으로 밀항하거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에 건너와 정착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뉴커머와 대비해서 올드커머를 두드러지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자이니치’를 문맥에 따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그에 반해 뉴커머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와서 정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지칭한다.

2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련)의 집계다.

3 2015년 11월 21일 자 『경향신문』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조우상 씨를

데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이다.⁴

1998년 봄 올드커머사회는 또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자이니치 역사상 최초로 강상중이 도쿄대학 사회정보연구소(나중에 대학원 정보학관·학제정보학부로 통합)의 조교수로 임용되었을 때다. 학부 중심 구(舊)제국대학의 학부장좌를 이어받는 교수가 아니라 새로운 대학원이 설립될 것에 대비한 인사였지만, ‘자이니치’들에게는 ‘도쿄대학’ 조교수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강상중은 ‘자이니치’들의 기대에 멋지게 부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재일동포가 된다.⁵ 여러 평가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김정득과 다른 의미에서 올드커머들의 묶은 한(恨)을 푸는 대리만족의 표상이 되었다.⁶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015년 가을 현재 일본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조선인 연구자는 아마도 1천 명에 육박하리라 추측되는데, 올드커머 중심인 변호사의 경우와는 달리 뉴커머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록 극심한 취직 차별 속에 대학이나 연구소에 정식으로 적을 갖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활발한 문예·평론 활동을 펼쳤던 올드커머 1세대—김달수, 이진희, 김석범, 김시중 등—의 뒤를 이어 다수의 뉴커머가 학자·연구자의 길을 걸으리라고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신·구의 구성은 거꾸로지만 연구자의 경우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의 문호가 개방된 지 불과 30년 사이에 일본의 인구비례를 넘는 인원이 배출된 것이다.⁷

크게 다루었으며, 『아사히신문』은 2015년 12월 27일 조간 “인물”란에 소개하고 있다.

- 4 법무사(일본에서는 사법서사라 한다), 행정서사, 변리사 및 세무사 등 기타 유사 법직종의 경우도 많은 적은 재일동포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 5 시마무라는 강상중이 정치철학과 재일론을 융합한 독자적 사상을 구축했다고 평하고 있다. 시마무라 다카노리, 「재일코리아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민족 해외동포의 현주소: 당사자와 일본연구자의 목소리』, 아사쿠라 도시오·오타 심페이 엮음, 학연문화사, 2012. 하지만 강상중의 연구가 점점 학문에서 문예평론으로 전환한 것도 사실이다.
- 6 올드커머들에게 강상중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강상중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냐보다 강상중 같은 인물이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 7 현재 〈한국인연구자포럼〉에서 일본 전역의 한국·조선인 연구자의 양적 조사에 착수했다.

2) 이 글의 의도

어느 사회나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는 여러 형태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공직이나 자국 중심의 대기업에는 취직하기 어렵기에 자영업과 전문직을 지향하게 된다. 많은 경우 디아스포라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재류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에, 그들이 직면하는 차별은 법적·제도적인 차별에서 사회적·경제적인 차별로 바뀌어간다. 외국인적 소수자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인 차별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차별에도 직면하고 있어 신분 상승이 결코 쉽지 않다. 재일동포의 경우는 여전히 많은 숫자가 한국·조선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 상승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법적·제도적 차별의 벽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신분 상승의 길은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가는 길이며, 다음으로는 법적·제도적 장벽이 적거나 없는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는 길이다.

유대인이 세계 어디에 가서든 노동자나 소상인으로 출발하면서도 나중에는 사업가로서 성공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자녀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사·치과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또는 학자, 언론인 및 작가 등 예술 분야에 종사토록 노력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⁸ 미국 뉴욕에 정착한 유대인의 경우 유대인에 대한 차별의 영향도 있어서 1940년대,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발적으로 (대규모) 관료주의적 조직을 기피하면서 독립적 실업가나 자영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길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⁹

재일동포의 경우는 유대인의 경우와 유사하면서도 상이하다. 우선 유사한 점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법적·제도적 차별 장벽과 극심한 사회적·경제적 차별 속에서 에스닉 공동체의 정보를 축적·배분하는 등, 에스닉 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장규모를 비(非)에스닉 시장까지

8 유대인 변호사인 칼 막스의 아버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9 네이션·그레이저, 다니엘·P·모이니한 著, 阿部 斎·飯野正子 訳, 『人種のるつぼを超えて』, 南雲堂, 1986, 186쪽.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립적 실업가나 자영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점도 뉴욕 유대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는 그 이유를 올드커머 재일동포들의 ‘기업가 이민’으로서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① 올드커머가 일본어 능력과 학력 면에서 일본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 ② 민족단체, 상공회의소뿐 아니라 민족금융기관이라는 사회관계 자본이 구축되어 있었던 점, ③ 올드커머가 전후 일관되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산업을 포착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점 등을 들고 있다.¹⁰

상이한 점으로는 재일동포의 경우 회사·단체의 임원, 상점주, 공장주, 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 종사자가 전문직, 기술자, 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상대적으로 후자의 직종들로의 진출이 상당히 늦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이는 외국인으로서 높은 법적·제도적 차별 장벽하에서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악조건에서도 에스닉 경제의 이점을 살리면서 신분 상승의 제고를 꾀해온 결과다. 특히 전문직 진출은 1990년대, 그것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히구치는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의 재일동포들의 직업 분포를 분석한 논문에서 집단거주지화, 경제적 동화 및 분극화의 세 가지 가설을 검토하면서, 1946~65년생은 여전히 에스닉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 반해 1966년생 이후 세대들의 경우 국적에 의한 취직 차별이 해소되고 화이트칼라 진출이 진행되면서 에스닉 페널티가 소멸하는 세대간 분극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최근]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볼 때, 이민 연구 용어

10 樋口直人, 「在日外国人のエスニック・ビジネス—国籍別比較の試み」, 『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 2010, 8쪽.

11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 『일본비평』 12호, 2015, 84쪽. 이 논문은 樋口直人, 高谷幸, 大曲由起子, 鍛冶到, 稲葉奈々子 등 5명에 의해 1990년 이후의 재일외국인의 직업(분포)에 대한 아래 일련의 연구에 많은 것을 의거하고 있다. 「1990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文化共生学研究』 第13号, 2014; 「1995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 第36号, 2013; 「在日外国人の仕事: 2000年 国勢調査データの分析から」, 『茨木大学地域総合研究所年報』 No. 44, 2011; 「2005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 第35号, 2013; 「2010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 第38号, 2015; 「家族・ジェンダーからみる在日外国人: 2000年 国勢調査データの分析から」, 『茨木大学地域総合研究所年報』 No. 44, 2011.

로 재일코리안을 자리매김한다면 분명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가 될 것이다”¹²라고 한다. ‘모델 마이너리티’는 ‘2세들의 교육수준과 화이트 칼라 진출’을 특징으로 하는 재미 아시아계 이민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히구치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의 경우 취직 차별 때문에 (모델 마이너리티가 되기까지) 그들보다 한 세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글에서는 전문직 진출이 민족적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위상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변호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현황을 정리하여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사회의 현재를 조명하려 한다. 무엇이 김경득 변호사 등장의 파장을 그리도 크게 한 것일까? 변호사 김경득의 등장이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사회와 재일동포사회에서 재일변호사들의 위상은 어떠하며 거기에서 어떤 의의를 찾아야 하는가? 학자 집단은 재일변호사 집단과는 어떤 이동(異同)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위의 히구치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가 일부 재일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결과,¹³ 그리고 2008년에 <한국인연구

12 히구치 나오토,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 『일본비평』 14호, 2016, 104쪽. 또한 『아사히신문』 최재수 기자의 2014년 10월 9일 전화 인터뷰에 대한 대답.

13 설문 조사에 응한 변호사는 11명이며, 그 외에도 복수의 자이니치, 뉴커머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적인 인터뷰에 의거했다. 이들은 현존하는 코리안 변호사의 1할 정도에 불과하지만 재일변호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동포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문 조사는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 연령, 국적, 재류자격, 사법시험 합격한 해, 출신대학 및 조선학교 재학 경험 등 신상에 관한 항목에 이어서, (i) 법조인이 되고자 한 동기, (ii) 한국·조선 출신인 것이 사법연수소를 수료한 후 취직할 때 또는 변호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지의 여부, (iii) 직업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만족도, (iv) 변호사라는 직업이 신분 상승에 유효한지의 여부, (v) 변호사라는 전문직과 변호사단체가 동포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vi)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로 대표되는 변호사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 (vii) 타 전문가단체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viii) 현재의 재일동포사회의 과제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도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이범준의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북폴마, 2015)는 저자가 직접 일본에 거주하며 재일변호사들을 취재하면서 3년간에 걸친 조사를 토대로 상세하게 기술한 재일변호사 연구서다.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간행된 것을 알게 되어 여러 가지로 참조했지만 이 글은 이 책과는 다른 시점에서 재일변호사 문제에 접근한 것임을 밝혀둔다.

자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개인적인 체험과 고찰을 바탕으로¹⁴ 재일전문가 집단의 현황과 위상을 다면적으로 조명하려 한다.¹⁵

2. 두 전문가 집단의 현황

1) 재일변호사 통계 및 재일변호사 단체들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들은 1977년 김경득의 등장을 계기로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증가해왔다. 변호사가 차별의 벽을 뚫는 새로운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된 것이다. 게다가 종래는 ‘자이니치’뿐이었으나 2004년 새로운 법과 대학원 설치와 그에 따른 신사법시험 제도가 출범한 이래 뉴커머들도 이미 7명이 합격했다.

〈일본변호사협회〉¹⁶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등록된 외국 국적 변호사 177명 중 한국·조선 국적 변호사는 뉴커머를 포함하여 164명이다. 2014년 11월 현재 일본의 전체 변호사 수가 3만 6373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조선 국적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0.45%로 재일동포의 일본 인구 비율인 0.4%를 웃도는데 겨우 40년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놀랄만한 결과다. 김경득 이전에도 외국적 사법시험 합격자가 13명 있었지만 국적 조항에 막혀 국적을 바꾼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¹⁷ 그 후에 국적을 바꾼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들까지 합치면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는 어렵잖아 20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국·조선 관련 단체로는 2002년 7월 결성되어 현재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의 7할이 훌쩍 넘는 123명이 소속되어 있는 〈재일코리아변호사협회〉(Lawyer's Association

14 〈한국인연구자포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http://ksfj.jp>

15 필자는 『일본비평』 12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에서 1990년 이후 재일사회 전체를 다루었으나, 이 글에서는 전문직에 한정하여 히구치의 가설을 전문가 집단에 적용해서 검증한다.

16 일변련이라고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성격의 단체다.

17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 29쪽.

of Zainichi Koreans, LAZAK)가 있다.¹⁸ 아울러 조국 분단의 현실이 드리워진 재일동포사회의 피할 수 없는 단면이지만, 1994년에 설립된 조총련 계열의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에 33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¹⁹ 2012년 11월에 민단체 변호사 30여 명이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을 결성하여 민단의 산하단체가 되어 있다.²⁰ LAZAK과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이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들만의 모임인 데 반해,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재일 변호사, 사법서사(한국의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서사 등 법조 유자격자와 인권 분야의 연구자, 시민운동가를 아우르는 단체라는 점이 다르다. 그 외 미국 등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변호사(transnational lawyer)가 10명 이상 있다고 한다.²¹

2) 재일연구자 통계 및 재일연구자 단체들

대학 교원의 경우는 국립대학교 교원직이 외국인에게 열리지 않는 등 국적·제도적 벽 때문에 울드커머 1, 2세대의 대학 진출이 늦어진 반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전문직 우대정책의 산물로서 주로 뉴커머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대학과 연구소에 대거 진출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1963년에 이미 사립대학에 적을 둔 서용달 교수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울드커머 1세대들이 대학에 적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립대학의 문호가 — 임기제라는 조건부로 — 개방된 후인 1980년대 말 이후였다.²² 통계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김정득의 등장과 그 영향으로 우수한 울드커머들이 학자보다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신분 상승의 효율적인 수단인

18 LAZAK 홈페이지 참조.

19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홈페이지 참조.

20 재일변호사 중에는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와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의 양쪽에 적을 두고 ‘중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알고 있다.

21 폴와이스 로펌 일본 지부 지부장 유동 변호사의 지적이다.

22 정인섭은 1989년 4월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 강덕상 씨가 채용된 것이 재일동포가 국립대학에 처음으로 채용된 사례라고 하는데, 뉴커머인 필자도 같은 해인 1989년 4월 요코하마국립대학에 채용된 것을 생각하면 울드커머, 뉴커머의 구분 없이 한국·조선인의 대학 진출이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 할 수 있겠다.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59쪽.

변호사를 택했고, 재일사회의 한정된 인적자원이 변호사에 쏠린 나머지 결과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에 진출하는 올드커머 수가 적어진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²³

통계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일본의 대학이나 연구소에는 1천 명에 육박하는 한국·조선인이 재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한국·조선인들보다 숫적으로 월등하게 많은 영어권과 중국인 교원의 다수가 어학을 가르치는 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는 전공 교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에서 수학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 수학한 후 한국 대학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 및 연구소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²⁴ 이공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뉴커머의 경우 문과 교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이동하는(귀국)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특기할 점이라 하겠다.²⁵

연구자들에게 단체란 보통은 학회 등 연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인 연구자들도 자신들의 전공 분야의 학회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조선인 연구자라는 특성상 전공이 한국·조선에 관련된 경우가 많아 일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한국·조선 관련 학회 및 연구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조선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회나 연구회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다. 조선학회는 덴리(天理)대학을 본거지로 하여 조선반도 및 조선에 관한 언어, 종교,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1950년 10월에 설립된 조선에 관한 학회로는 일본 최고(最古)이며, 조선사연구회는 한국사 연구자만으로 1959년에 창립되었는데 현재 일본에

23 이에 대해서 김웅기 교수는 재일 전체의 화이트칼라 진출이란 맥락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2015년 11월 6일 재외한인학회 추계대회에서 필자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 필자의 생각으로는 왜 올드커머 연구자가 적은가를 생각할 때 올드커머 인재들이 변호사에 치중된 점이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 『일본비평』, 12호, 86쪽.

24 〈한국인연구자포럼〉을 통해서 파악해보면 전체의 10%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한다.

25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예상 이상으로 정주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측한다.

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사 학술지로 평가받는 『조선사 연구회 논문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와 현대한국조선학회 등에서 한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8년 5월 설립된 <한국인연구자포럼>은 한국·조선 출신 연구자만의 학문적·인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현재 회원수가 190명에 이르며 매년 5~6회의 정례연구회와 전국 규모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인연구자포럼>이 일본화인(華人)교수회와 아울러 소위 유식자 에스닉 집단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²⁶

3. 재일변호사 집단의 경우

1) 제1호 재일변호사 김경득 탄생의 의미: 차별 극복의 상징

1970년대 중반은 여전히 극심한 일본사회의 차별에 대해 재일동포사회의 개별적·집단적 저항이 싹트기 시작한 때다. 이 시기에 김경득이 한국적을 보유한 채 사범연수소에 입소했다는 사실은 재일동포사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갖는다. 당시 재일동포들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부동산, 야키니쿠(焼肉), 파친코, 야쿠자 등 에스닉 산업과 일본인이 종사하지 않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연의 법리’하에서 공무담임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그것도 외(韓)국적을 보유한 채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재일동포가 극심한 차별 속에서 본명을 감추고 ‘매몰되어’ 살아가는 상황에서 본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변호사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김경득 ‘변호사’ 출현이 재일동포사회에

26 <일본화인교수회>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 주건영 도요가쿠엔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지원과 영향이 크다는 인상이다.

갖는 역사적·사회적 의미인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통성명을 버리고 본명을 쓰기로 결심한 김경득은²⁷ “나는 23살이 되었지만 김경득이란 이름과 한국 국적, 차별받은 체험 이외에는 조선인으로서의 소양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차별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부딪쳐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법시험을 보기로 했다. 당시 일본국적이 없으면 사법연수생이 될 수 없었지만 이러한 민족차별에 대항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적을 가진 채로 연수생으로 채용되도록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술회한다.²⁸

아마도 재일동포사회에서 김경득의 사법연수소 입소는 콜럼버스의 달걀에 견줄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석 재판이 승리로 끝나고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었지만, 아직 인도차이나 난민이라는 ‘외압’의 출현으로 일본 정부가 1979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기 2년 전에,²⁹ 히타치라는 ‘민간’ 기업이 아닌 사법연수소란 ‘관’(官)에 한국적을 보유한 조선인의 입소가 허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재일동포사회의 ‘상식’을 초월한 것이었다. 최근 간행된 책에서 이범준은 최고재판소가 김경득의 사법연수소 입소를 허용한 데는 당시 격렬함을 더해가고 있던 일본과 미국의 통상 마찰 속에서 법무시장 개방을 요구한 미국의 ‘외압’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³⁰ 김경득의 쾌거는 재일동포사회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김경득의 쾌거에 용기를 얻은 많은 자이니치 젊은이가 변호사를 지망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나카 교수가 김경득이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 면식이 없는 재일동포들한테 “저희 애들에게도 변호사가 되

27 김경득이 본명을 쓰기로 결심한 같은 해인 1972년에 강상중도 나가노 데쓰오(永野鐵男)라는 통성명을 버리고 본명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이로써 재일동포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있던 두 명의 스타가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매몰되어 있던 삶을 정리하고 ‘조선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28 金敬得, 「自分を取り戻す道」, 『環』 vol. 11, 2002, 가을, 192쪽.

29 1979년 국제인권규약 가입과 1981년 난민조약 가입이 인도차이나 난민의 발생이라는 ‘외압’에 의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田中宏, 『在日外国人: 法の壁, 心の溝 - 第3版』, 岩波書店, 2013, 제6장.

30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 31쪽.

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고 말하고 있듯이,³¹ 김경득 이후에 재일동포사회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시험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재일사회의 인적자원이 변호사에 집중된 나머지 연구자로서의 진출이 적었던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2) 재일변호사 집단의 현황과 과제

(1) 변호사 지망 동기와 그 귀결로서의 신분 상승: 설문 조사 회답에 의거하여 설문 조사에 나타난 재일변호사들의 변호사 지망 동기는 복잡적이면서도 순수한 것이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자이니치들에 대한 취직 차별이란 현실을 자각하고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택하고 있었다. 최근에 변호사가 된 뉴커머들의 경우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이니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에 저항해, 변호사가 되어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일본 전체의 소수자 권익 제고에 공헌하겠다는 일종의 사회정의 실현 의지가 동기인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를 실현하는 데 법조 ‘자격’에 의거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명의 회답에서 본명을 사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한국·조선 출신인 것이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까지 걸림돌이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대답과 ‘있다’는 대답이 병존했다. 일본인이 본명을 쓰는 재일코리안에게 사건을 맡기려 하지 않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대답이 있었는데, 다수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흥미롭게도 한국말을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대답이 많았는데, 최근에 변호사가 된 뉴커머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직할 때 오히려 유리했다고 대답하고 있다.³² 외국

31 다나카는 김경득 ‘폐거’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田中宏, 『在日外国人: 法の壁, 心の溝 - 第3版』, 146쪽). 이번에 설문 조사에 응해준 한 중견 변호사도 차별의 독에 물꼬를 터준 김경득 변호사에게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32 필자가 1995년 4월에 하버드대학 로스쿨에 객원연구원으로 갔을 때 이미 그곳의 한국계 미국학생들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적 가치가 커질 것을 감지하고 한국 말을 공부하면서 한

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피 경향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재일코리안이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한국말을 구사함으로써 한국 관계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어서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는데, 일을 통해서 타인을 돕고 결과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사법제도는, 정치적인 안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공정하여, 학력, 인맥,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소송당사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만 하면 거기에 걸맞는 보답이 주어지는 실력주의 사회라는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2) 신분 상승의 유효한 수단인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신분 상승의 유효한 수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평가가 있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재일동포 중에서 의사가 많은데 비해 변호사는 아직 적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이 —특히 한국과 비교하여— 그리 높은 것이 아니고 높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³³

더구나 법과대학원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에 의해 변호사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본사회에서 변호사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더는 신분 상승의 유효한 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일부를 제외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으며 앞으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

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에 한국에 유학한 김정득과 배훈 변호사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 참조),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유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어 수요에 응해온 것은 한국어가 구사 가능한 조선학교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조선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경우는 2, 3년씩 유학을 다녀온 변호사들이다. 앞으로 뉴커머 변호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양국의 사법시험 동시 합격자가 탄생했다.

33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기 이전 한국 변호사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데다 판검사 출신이 많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법연수소 수료자들이 처음부터 변호사를 택하는 일본에 비교해서 사회적 인 위상이 높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득 등장 이래 많은 우수한 인재가 변호사를 지망하고, 200여 명의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의 등장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의 사회적 위상의 제고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당연의 법리’하에서 외국인의 공직 진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사회에서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한국·조선적 출신이 많이 진출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조선대학교 법학과는 신사법시험 준비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일변호사 단체의 현황

개인적으로 타인을 법적으로 도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수년여의 시험 준비를 통하여 탄생한 변호사들이지만 그러한 변호사들의 단체 활동은 필요한 것인가? 변호사로 등록하면 어느 일본인 변호사와 같이 어딘가의 기존 변호사회에 소속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 이외에 따로 ‘재일변호사단체’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 단체들의 역할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들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설문 조사에 응한 변호사 대부분은 재일변호사 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대부분 차별을 직접 경험한 자이니치 출신으로서 재일동포의 생활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재일변호사가 개인적인 활동에 더해 소수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까지 활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현재의 LAZAK 평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LAZAK의 설립취지서를 읽어보면 출범 시에 확고한 목적을 내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⁴ LAZAK 설립의 계기는 2001년 일본의 보수파 의

34 LAZAK 홈페이지 참조.

원들이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법안을 저지하려고 ‘일본국적간이취득법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재일변호사 22명이 성명을 발표한 데서 비롯된다. 성명의 내용은 새로운 법안의 발의 시에는 재일동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일동포의 인권보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이들 변호사가 모체가 되어 LAZAK을 설립한다. 설립 목적으로 (i) 재일코리안에 대한 법의 지배의 실현, (ii) 모든 소수자의 권리 자유의 옹호, (iii) 재일코리안 변호사의 총집결, (iv) 세계의 코리안들과의 연대를 내걸었다. (i) 재일코리안에 대한 법의 지배의 실현이란 구체적으로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권리 옹호, 민족교육 등을 통한 민족성의 회복,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의 획득 등이다. 다른 세 가지 목표와 함께 보았을 때 출범 시 LAZAK이 나름대로 확고한 목적을 내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초기의 LAZAK은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권리 옹호와 관련된 집회를 주최하고 관련 단체의 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재일동포 및 일본의 전후 청산 재판에 관여하고, 최고재판소의 외국인 조정위원 및 사법위원 채용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에 관한 여론환기 등 설립 취지에 걸맞는 활동을 했다.³⁵ 이러한 활동 중 하나가 다름아닌 『재판속의 재일코리안: 중학생의 전후사 이해를 위하여』의 출판이다. 17명의 LAZAK 회원이 분담 집필한 이 책은 제1장에서 재일코리안의 기원과 법적 지위에 대해 정리하고, 제2장에서 재판 속에 재일코리안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형사사건, 전후 문제, 일상생활 속의 차별, 막혀 있는 정치참여와 사법참여로 나누어 기술한 후, 제3장에서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LAZAK의 설립 취지와 목표가 축약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보기 드문 역작이다. 그 후에도 LAZAK은 한국의 가족법 해설 및 한국의 사법적 다이내미즘의 상징인 헌법재판소 중요판례 소개서 간행과 아울러 한국 법조계와의 교류 등 활동을 계속해왔으나, 설립 초

35 LAZAK 홈페이지 참조.

기의 권리 옹호 활동 및 연구·출판 활동에서 서서히 교류 및 친목 활동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갔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LAZAK의 회원 수가 설립 시의 28명에서 2015년 10월 현재 123명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회원 구성이 되어,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진 것을 들 수 있다.³⁶ 다시 말하면 설립 시의 확고한 목적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칫하면 남북관계가 투영되기 쉬운 우리 현실에서 한국적과 조선적 변호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최소공배수적인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로서 유지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재일동포사회가 다양화하고 복합화되어가는 가운데 재일동포라는 공통 분모만으로 변호사 단체가 유지되기는 어렵고, 더구나 사회적 정의 구현이란 변호사의 도덕적 의무에 호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금씩 이나마 재일 한국·조선인이란 틀을 넘어 소수자 전체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자각이 싹트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³⁷

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이 모여 최소공배수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단체로서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또한 운동체로서의 성격이 약해지면, 부족한 부분을 다른 형태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표면화한 사건이 2012년 11월 8일 LAZAK의 일부 회원이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을 설립하여 민단 산하단체가 된 것이다. 설립 목적으로는 (i) 재일한국인의 인권 옹호, (ii) 재일한국인 등, 일본의 외국인자 및 민족적 소수자에 관한 법제 연구, (iii) 민단에 대한 자문 제공을 들고 있다.³⁸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은 LAZAK의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데 대한 ‘이질감’을 느낀 변호사들이 특정 목적을 가진 운동체로서 결성한 것인데, 설립 취지문 중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기관

36 LAZAK 회원 수는 법무법인 오르페우스의 김기연 변호사가 알려주었다.

37 설문 조사 답변.

38 『통일일보』, 2012. 11. 14.

(정부)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민단에 대해서 조언과 제언을 함으로써 재일 한국인의 인권 옹호를 ‘현실적이며 실천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부분에 포럼 설립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³⁹ 현재 민단의 산하단체로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문제에 대한 대응, 민단 단원에 대한 법률 인권세미나 제공, 회원을 상대로 한 조사연구 및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 단체가 한국과 일본 정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민단의 ‘산하 단체’로서 어디까지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활동이 가능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재일조선인인권협회〉는 LAZAK의 결성보다도 빠른 1994년 2월 재일동포의 권리 옹호와 생활 향상에 공헌한다는 목적하에 재일조선인 변호사, 사법서사, 세리사, 공인회계사, 행정서사 등의 법조·회계 유자격자와 인권 분야의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단체로 설립되었다.⁴⁰ 조총련 산하에 있으나 비교적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⁴¹ LAZAK와 민단계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이 변호사만의 단체인 데 반해서, 〈재일조선인인권협회〉는 33명의 변호사 이외의 유사 법직종과 학자, 운동가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독자적인 사무실과 4명의 전속 직원이 있어 다른 조직들보다 기동성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의 활동으로는 인권 옹호 활동, (법률·생활)상담활동, (회원의 전문지식 향상과 연구 발표·교류를 위한) 연구활동 및 서적출판활동을 내걸고 있다. 이미 40호에 달하는 『인권과 생활』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현상 고발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조총련 산하라는 성격 때문에 구성원의 대부분이 조총련 계열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전속 직원을 두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특정한 가치관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경우라 할 수 있다.

39 『민단신문』, 2015. 4. 8.

40 LAZAK 설립 시 김경득 변호사는 변호사뿐 아니라 유사 법조 직종 및 법학자들이 어우러지는 〈재일법조인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변호사만의 모임인 LAZAK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41 이준희 변호사 인터뷰.

이상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 개의 변호사 단체인 LAZAK, 민단 계열의 〈재일한국인법조포럼〉, 그리고 조총련 계열의 〈재일조선인인권협회〉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미 각각의 과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사회가 다양해지고 복합해짐에 따라 재일변호사들도 한국적, 조선적, 귀화자 및 뉴커머 출신이 혼재한 상태에서, 이미 200여 명에 달한 변호사들의 요구의 최소공배수 또는 최대공약수의 도출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이렇게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가치관과 생각이 다양해지면, 같은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또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나 도덕적 책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구심점이 모이기 어려울 것이다. 특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의 분리·병존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단체는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도 재일동포가 외국인의 일부이며 소수자 그룹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재일동포의 차별 해소 등 인권 옹호 활동이 외국인 전체와 관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일동포의 인권 옹호가 외국인 전체의 인권 옹호에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다수인 일본사회에도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의 숙명적 과제인 남북의 분단 상황이 투영되어 조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일변호사 ‘단체’가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기의 새로운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도 여전한 과제라 하겠다.

4. 재일연구자 집단의 경우

1) 재일 1세와 초기 2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조선적 연구자의 일본사회로의 진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변호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1990년대 후

반 이후 정착한 뉴커머가 다수를 점한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활약했던 자이니치 1세와 초기 2세들의 존재와 활약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김달수, 김석범, 김시중, 윤학준, 이희성 및 양석일 등 문예 및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인사들과, 대학에도 재직하면서 주로 조선사와 한일관계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박경식, 이진희, 강재언, 강덕상, 서용달, 김동훈, 김양기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1930년대 이후에 도입해 일본어에 능숙했고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한편에서는 ‘한국학’적인 문학·문예 평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잡지 발행 등 언론 활동에도 종사했다. 김달수, 이진희, 김석범 등에 의해 1975년 2월에 계간으로 창간되어 1987년 5월에 50호로 폐간된 『계간 삼천리』는 정주화가 진행되는 재일동포사회를 직시하며 ‘재일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심화시켜가며 그야말로 재일동포사회, 그리고 재일동포와 일본인 간의 사회문화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삼천리』에 참여한 1세 문예인 대부분은 조총련에서 버림받거나 스스로 등을 돌린 이들로, 기성 민족조직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예·언론 활동을 한 것도 특징이다.⁴²

학문적인 연구 업적으로는 1965년 출판된 박경식의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은 50쇄를 넘기며 현재까지도 출판되고 있는 것이나, 1972년 발표된 이진희의 ‘광개토대왕비개찬설’은 당시 남북한과 일본의 고대사 학회에 센세이셔널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모았던 것을 들 수 있다. 1963년 젊은 나이에 모모야마학원(桃山学院)대학에 채용된 서용달은 회계학자로서, 1982년 류고쿠(龍谷)대학에 취직한 김동훈은 국제법학자로서 각각의 학계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초기의 사례다. 분단의 역사 및 국적·제도적 장벽으로 학문적 진출이 쉽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조선사(고대사 및 근대사)와 한일관계에 연구가 경도되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회계학의 서용달과 국제법

42 동선희, 「계간 『삼천리』(1975~1987)의 ‘재일문제’ 논의」, 『재일코리안의 생활 문화와 변용』, 선인, 2014, 187쪽.

의 김동훈의 사례는 선구적이라 하겠다.

2) 뉴커머 중심의 급속한 증가

그 후 연구 분야가 여전히 조선사와 한일관계에 치우쳐 있긴 했지만 조금씩 학문적으로 평가받는 재일 2세 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미 기술한 대로 강상중은 재일 출신 오피니언 리더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도쿄대학에 현대한국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초대 소장을 맡았고, 도쿄대학을 정년 전에 퇴직하여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학장(총장)으로 취임하는 등 모든 면에서 자이니치로서 기록을 갱신해왔다. 그 외에 재일 2세로서 가나가와(神奈川)대학에 재직하면서 재일사상가로서 우뚝 선 윤건차,⁴³ 정치학자로서 한일관계와 재일동포를 연구한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의 문경수,⁴⁴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깊이 있는 연구로 정평 있는 와세다대학의 이성시, 그리고 조선근대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지바(千葉)대학의 조정달 등이 ‘자이니치’ 학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전술한 국제고려학회와 현대한국조선학회 등에서 자이니치 학자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나, 이공계 분야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자로서의 자이니치들의 진출과 역할이 활발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고급인력’[高度人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교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뉴커머 연구자가 급증하게 되면서였다. 통계로 확인하면 1991년 일본 전체 고등교육기관 상근교원(常勤教員) 12만 6445명 중 외국인은 2415명으로 1.9%였으나, 2014년에는 18만 882명 중 외국인이 세 배에 달하는 7290명으로 늘어나 전체 교원 중 4.03%를 차지하게 되었다.⁴⁵ 또 다른

43 최근 윤건차는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에서 『在日の精神史』 1, 2, 3권을 간행했다.

44 최근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와 함께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를 간행했다.

45 통계 입수에는 도쿄출입국관리소에서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국제사회과학연구부 석사과정에 파견되어 연구하고 있는 기무라 가요(木村佳代) 씨의 도움을 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반드시 대학 교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⁴⁶ 1990년에 교수·연구 비자 소유자가 각각 77명과 85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각각 923명과 189명으로 늘어나 20년 동안 한국인 연구자와 한일간의 연구자 교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⁴⁷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조선인 연구자의 진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 각계에서 학문적으로 높이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⁴⁸ 이공계가 거의 파악이 안 되고는 있지만 문과 교원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연구 분야별로 보면, 경제, 경영, 사회학, 국제관계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신문방송학, 교육학, 언어학, 역사학, 법학, 문화인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어·한국문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⁴⁹ 또한 도쿄대와 교토(京都)대를 비롯한 소위 구제국대학으로의 진출도 눈에 띄는 것만 아니라, 분야별로는 일본인을 제치고 전공 강좌의 후계자로 지명된 경우도 있다.⁵⁰ 오피니언 리더로서 제2, 제3의 강상중을 목표로 매스컴에서 활약하는 경우도 소수지만 존재한다.⁵¹

3) 연구자 단체의 뒤늦은 형성과 과제

이미 2001년에 LAZAK가 결성되어 활동해온 변호사 집단과는 달리 연구자들의 경우는 그 대다수가 1990년 후반부터 급속히 뉴커머 중심으로 구성되어온 탓에 한국·조선인 연구자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했다. 각

46 왜냐하면 1) 교수 비자에는 객원연구원이 포함되나 영주자와 특별영주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2) 문부성의 외국인 교원 숫자에는 국적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7 2015년 6월 일본 정부는 ‘고급전문직’ 비자를 신설하였으나 현재 일본사회의 ‘유인력’이 저하하는 가운데 얼마나 우수한 해외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48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조기철 교수에 따르면 조선대학 출신으로 대학에 자리잡은 조선적 동포들이 7.8명 정도 있다고 한다(2015년 6월에 청취).

49 〈한국인연구자포럼〉 홈페이지 연구자 명부 참조.

50 게이오(慶應)대학 사회학부 이광호 교수, 교토대학 법학부 남경태 준교수 등이다.

51 올드커머로서는 오사카시립대학 박일 교수, 뉴커머로선 와세다대학 이종원 교수, 도카이(東海)대학 김경주 준교수 등이다.

지방의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도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구심력이 있는 변호사 집단과 달리,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학회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자의 속성상 한국·조선인만의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재일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복합화가 학술·문예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재일 1, 2세대 문예인·연구자들의 에스닉 그룹으로서 활동은 주로 잡지 간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김주태, 김양기, 오준학 등이 1973년 가을에 창간하여 1975년 여름까지 간행한 『기간 마당』(季刊まだん), 1975년 봄에 창간되어 1987년 여름에 폐간된 『기간 삼천리』(季刊三千里), 이회성, 김찬정 등이 1987년 11월에 창간하여 1990년 10월에 종간한 『기간 민도』(季刊民濤), 그리고 『사천리』 폐간 후 이진희가 한창우의 도움을 받아 1989 가을에 창간하여 1996년 봄에 종간한 『기간 청구』(季刊靑丘)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반해 연구회 등은 1959년에 창립되어 상당 기간 조선인 연구자만으로 구성되어 조선사에 한정된 경우지만 <조선사연구회>가 대표적이며,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소규모 연구회가 여럿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²

예외적인 존재가 1983년 설립된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在日韓國科學技術者協會)인데 회원 자격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학약학 기타 자연과학계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또는 산업기술계에 종사하는 좌기(左記)와 동등한 자격 갖고 있는 자”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자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⁵³ 하지만 어떤 활동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민단 산하단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일동포사회의 세대 교체 그리고 신정주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52 기타규슈(北九州)대학 윤명현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 규슈지역에 자이니치들의 연구회가 있었다고 한다.

53 <민단> 홈페이지 참조.

가운데서도 문과·이공계를 아우르는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한국·조선인 연구자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긴 공백을 뚫고 나온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출범한 <한국인연구자포럼>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2012년 8월에 모모야마학원대학 명예교수 서용달이 1974년 결성되어 국공립대학 외국인 임용 운동을 전개했던 <대학교원간담회>를 부활시켜 <재일한국조선인대학교원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시켰으나⁵⁴ 현재까지 두드러진 활동은 없는 것 같다. 2013년에는 오사카에서 주로 뉴커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박일 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관서한인교수회>를 발족시켜 틈틈이 모임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에는 동북지방에서 <동북지역 한국연구자포럼>이 발족되어 동북대학 이인자 준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상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조선인 연구자가 예상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학문적·인적 네트워크가 실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연구자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는 연구자일수록 동포단체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자의 속성상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국제화가 충분하지 않은 일본의 현실에서,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화와 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동포단체들이 쇠퇴하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축과 긴밀화는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5. 기타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의 외연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는 차치하고, 여기서는 의사

54 『민단신문』, 2012. 9. 19 참조.

와 마스크의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겠다. 전문가로서 일본사회에 진출이 가장 빨랐던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는 이미 1990년대부터 자이니치의 비율이 일본인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⁵⁵ 1970년대에는 올드커머 2세들이 수업료가 비싼 일본을 피해 한국의 치·의대를 졸업한 후 다시 일본에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재일동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한국에 가지 않고 일본 대학의 의학부를 수료하고 ‘일본’ 의료계에서 활약하고 있다.⁵⁶ 의사는 변호사와 연구자들과 달리 불특정 일본인 환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일본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스크의 경우 비교적 늦게 자이니치들에게 개방되었으나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아사히신문』을 비롯하여 현재 수십 명이 전국지 및 지방지에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⁵⁷ 최근에는 NHK를 비롯한 TV방송에서 기자들이 자신의 본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전국지 데스크와 서울 지국장까지 나오는 등 양적·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 나오며

1) 1세대 늦은 ‘모델 마이너리티’?

이 글의 모두에서 소개한 히구치의 세 가지 가설과 ‘최근 30년간의 변화를 볼 때 취직 차별 때문에 재미 아시아계 이민보다 한 세대가 더 소요되었지만 재일코리안은 높은 교육수준과 화이트칼라 진출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 마이너리티’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55 통계는 주 12의 히구치의 논문 참조.

56 지바의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정형외과 병원을 7개나 운영 중인 이소구 씨의 사례.

57 林英香, 「ニュース編集室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ジャーナリストの様相に関する一考察:在日コリアン・ジャーナリストのインタビュー調査を通じて」, 東京大学大学院学際情報学府修士論文, 2012.

나올 것인가? 현재의 재일변호사의 압도적인 다수가 1966년생인 점, 연구자들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뉴커머를 비롯한 연구자의 다수가 1960년대 이후 출생인 점을 생각하면 히구치의 경제적 동화 가설과 ‘모델 마이너리티’ 결론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의 국세조사 통계에 의하면 재일동포의 전문직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⁵⁸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동포의 전문직 진출은, 의사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화된 관계로 아직 미흡한 단계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2015년 현재 한국·조선 출신 변호사가 200여 명에 이르고 대학 및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많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매스컴 종사자는 이제 겨우 물꼬가 트인 정도다.⁵⁹ 전문직 진출이 민족적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위상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임을 생각하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던 시대와 비교할 때 일본사회에서 현재 재일동포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듣기 좋은 한마디로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뉴커머가 중심인 한국인 연구자의 수적인 증가 추세가 계속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고도인재 시장의 글로벌화가 외국인(한국인) 연구자의 ‘공급’ 측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반대로 현재의 일본사회의 외국인(한국인) 연구자 ‘수요’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만큼 재일동포사회의 노력이 요청된다.

더구나 재일동포가 전문직에 진출했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당연의 법리’에 근거한 차별 대우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었다 해도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민사·가사 조정위원과 사법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 대학 교수가 되었다 해도 약 84만 명의 과학자를 대표하고 과학의 중

58 주 12의 히구치 등의 논문 참조.

59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 86쪽.

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일본학술회의’의 경우, 그 설치법에 국적조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추천 절차에서 추천대상자는 일본국적자에 한정하고 있다. 외국인 연구자가 안식년에 해외에 나가기 위해 민간 재원(fund)을 찾으려면 아직도 대부분 국적조향이 가로막는다. 나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심의회 등에도 외국인은 거의 상징적으로밖에 등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이 남아 있다.⁶⁰

전문직 중에서도 학문·연구 분야에 있어 에스닉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학문적 정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일본 학사원 회원에 버금가는 우수한 한국인 학자들이 탄생하고 일본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한 재일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당연의 법리’를 직접적·단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간접적·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2) 재일동포사회의 미래와 전문직(단체)의 역할

현재 재일동포사회는 1990년대 이후 구성원의 다양화와 복합화가 현저해지면서 정체성이 융해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편,⁶¹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원심력의 원만한 조절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율하는 동포 단체의 부재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민단과 조총련으로 대표되는 동포단체의 현황은 매우 심각하며,⁶² 전문 직종의 단체들도 상황은 비슷하

60 유혁수·은용기, 「일본의 외국인 법제의 개요와 과제」, 『일본공간』 17호, 157쪽 이하.

61 2013년 7월 시즈오카에 사는 자이니치 3세가 10년 이상 근무해온 정화조 회사의 일본인 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명(한국명)을 사용할 것을 중용받고, 종래 시간에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일 한국인임을 밝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통성명(일본명)을 강요받았다 소송에 이르는 사건은 여러 번 있었지만 본명을 강요받았다는 사건은 처음 이어서 재일동포사회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2015년 4월 24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한국명을 쓰다가 일본명을 쓰는가는 개인의 아이덴티티 문제”이며 수차례에 걸친 본명 권유 및 재일한국인임을 폭로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은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에 항소했으나 2015년 10월 14일 판결의 역점은 달라졌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최고재판소에 상고 중이다.

62 민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개선책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는 유혁수, 「재일한/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울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0호, 2014.

다. 변호사 단체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나 연구자들의 경우 7년 전에 설립된 〈한국인연구자포럼〉을 제외하고는 재일연구자들의 횡단적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스컴의 경우도 비정기적으로 재일변호사들과의 연구회 모임이 있다고 들었으나 아직은 일천한 단계다.

반면에 일본사회의 현실을 보면 1991년 1월 1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교환한 각서, 소위 ‘91년 합의 각서’에 의해 올드커머들에게 특별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8개 항목에 대한 개선 및 개선 노력이 합의되었으나, 25년이 지난 현재 합의 내용을 되집어보면 8개 항목 중에서 특별영주권 부여와 지문 날인 폐지 정도가 실현되었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만 개선되었거나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즉 재입국허가 제도가 그대로 있으며, 재류카드 휴대의무의 경우는 2012년 신입국관리법에서 올드커머에 대해서는 ‘휴대의무’가 ‘제시의무’로 바뀌고 외국인 자녀 취학안내 발급은 실현되었지만, 소수민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무원 및 교사 채용의 경우는 ‘당연의 법리’ 앞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된 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참정권은 2000년대 이후 논의조차 정지된 채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⁶³

현재 재일동포사회는 구성원의 정체성 약화에 따른 구심력의 이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여전한 일본사회의 법적 장벽 및 험한 정서 등과 같은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노력이 재일동포뿐 아니라 여타 소수자 나아가 일본사회에도 유익하도록, 즉 특수성을 보존하면서 보편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전문직 종사자는 통상 유식자를 의미하는데 유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며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직함[일본말로 가타가키(肩書)라 한다]을 중요시하는 일본사회에서 전문가 = 유

63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위상」, 73쪽 이하.

식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⁶⁴ 또한 재일동포사회 및 동포단체에 대해서도 전문가=유식자 단체는 중요한 조언,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동포단체에는 동포사회의 현황을 조사·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및 정책 제시 기능이 매우 취약한 바 전문가 단체, 특히 연구자 단체의 경우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육성과 전문가 집단의 건전한 형성과 발전이 중요한 이유다.

64 한국에서는 TV에서 인터뷰를 할 때 대부분 주소와 이름이 표시되지만 일본에서는 가타가키가 있는 사람만이 표시된다.